

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(2023. 12. 15.)에서  
의결된 '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'을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.

2023년 12월 18일

고흥군의회 의장 이 세 항

고흥군의회 규칙 제 2023-54 호

###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 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제69조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57조(의사일정과 개최일시)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는 위원장이 <u>간사와</u> 협의하여 정한다.</p> <p>제69조(위원회 회의록) ①·② (생   략)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<u>간사가</u> 서명· 날인한다.</p>	<p>제57조(의사일정과 개최일시) ----- ----- <u>부위원장과</u> -----.</p> <p>제69조(위원회 회의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<u>부위원장이</u> ----- -----.</p>